

대신대학교 사택관리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사택(이하 사택이라 함)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학교의 자산을 보존하고 교직원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택이라 함은 학교가 건립 또는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전임교원, 사무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책임) 사택의 관리 책임은 대학교 총무처장이 진다.

제2장 입주 및 퇴거

제4조(입주) 사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사택 입주원을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입주가족의 제한) 입주가족의 범위는 교직원인 세대주가 부양할 의무를 가진 직계존비속과 그 사용인에 한한다.

제6조(구비서류) 입주가 허가된 자는 <양식 1>의 각서를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입주허가) ① 교무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입주를 허가한다.

② 사택 입주원을 제출한 교직원이 경합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.

1. 본 대학교의 초빙에 의하여 부임하는 무주택 교원
2. 무주택 교직원으로서 학교 사택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

③ 입주기간은 4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연장 거주할 수 있다.

제8조(퇴거) 사택입주는 아래의 경우에 사택을 3개월 이내에 명도하여야 한다.

- ① 사직 또는 퇴직을 하였을 때
- ② 학교계획에 의하여 퇴거 통보를 받았을 때
- ③ 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퇴거 통고를 받았을 때
- ④ 휴직기간이 1년을 초래하였을 때

제3장 입주자의 의무

제9조(입주자의 의무) 사택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
- 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는다.

- ② 학교의 허가없이 사택의 사용변경,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되며 주택부지에 시설물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.
-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시설, 비품 기타 수목을 분실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- ④ 사택, 시설물, 비품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.
- ⑤ 주거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(가전제품, 주방용품, 가구, 커튼, 침구 등)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.
- ⑥ 입주자와 그 동거인 및 그 사용자의 과실,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시는 입주자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제4장 사택의 유지

제10조(사택의 유지) 사택의 유지를 위하여 학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유지 및 보수의 책임을 진다.

- ① 사택은 교사에 준하여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② 내부구조는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개보수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.

제5장 제세공과금

제11조(제세공과금 징수) ① 사택에 부과되는 전기료, 수도료, 전화요금, 관리비등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계산방법) ① 월의 도중에 퇴거하는 자의 제세공과금 계산은 월의 대소를 불구하고 1월 30일로 계산하여 일괄 계산한다.

- ② 제세공과금 계산에 있어서 100원의 이하는 절상한다.

부 칙

- 1. 이 규정은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.
- 2.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양식 1>

각 서

본인은 금번 아래의 학교 소유 사택에 입주함에 있어,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학교 당국의 요청 및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사택 입주기간을 4년을 원칙으로 하되 4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것과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.

1. 사택소재주소 :

2. 사택의 구분 : 일반주택(대지 : 평, 건평 : 평)

아파트(평수 : 평)

3. 사용기간 : 20 년 월 일부터

20 년 월 일까지

20 년 월 일

사택입주자 소속 :

직위 :

성명 : (인)

대신대학교 총장 귀하